

기술사용협약서

- 특 허 명 : 강제고기굴 어초
- 특허번호: 특허 제10-0831748호
- 발주기관 : 울산광역시
- 특허 보유자(또는 협약 대표자) : 해주이엔씨(주) 대표자 백상현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1년 울산광역시 인공어초시설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특허 보유자”가 위 공사에 해당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특허공법 부분만(기술사용·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특허 보유자”는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020-1331호)에 따른 요율을 공사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계약금액 기준 기술 사용료 산정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받는 것에 동의한다.

② “특허 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특허 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허 보유자”의 기술적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확보가 불가능하거나, “특허 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허 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특허 보유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특허공법과 관련하여 “특허 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특허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특허 보유자가 보유한 (특허 등으로 보호받는) 공사에 필수적인 장비를 공급(유·무상)하지 않아 공사 진행을 현저히 방해 또는 지연 시키는 행위 등

제6조(기타) ①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020-1331호)에 따른다.



2021년

1월

일



“발주기관” 울산광역시장 송철호

(인)



“특허 보유자” 해주이엔씨(주) 대표 백상현



「참고사항」: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특허) 보유자가 2인 이상(통상실시권자 제외)인 경우 협약 당사자 외의 기술(특허) 보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